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1033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겸

담당변호사 김태현, 박건우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양재성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전 6936㎡에 관하여 2020. 8.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8. 접수 제50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주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E 공장용지 110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C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남서쪽 모서리에 접한 D 전 693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은 골프장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2017. 9. 11. 부산 사하구에 강수량 258mm의 비가 내리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존재하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붕괴되면서 위 옹벽이 이 사건 공장 쪽으로 쓰러졌고, 위 옹벽 잔해 및 토사 등에 의해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내부 기계설비 등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옹벽에는 배수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건물 내부 설비들 파손으로 인한 비용 등 수십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C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지 불과 4일 만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는 C의 남편이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C의 아들이다. 또한, 피고의 본점소재지는 채무자인 C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C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마치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8. 28.자 매매예약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058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1. 15. ‘C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본점을 두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이 사건 옹벽 등을 설치한 자는 F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옹벽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옹벽 등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직접 점유자는 F이고, C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간접점유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등을 선고한 사실(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현, 판사 이진아, 판사 김라미